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4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조 *영	조 *영 1960-09-06	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(효문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11-24
이 *섭	이 *섭 1988-11-16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길 (진장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11-24
김 *태	김 *주 1972-08-05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(명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11-24